

의안번호	2212123
의 퇴 인	김정재의원
회 답 일	2025.9.3.
추계번호	25D43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600만원, 2031년 8억 1,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억 200만원(연평균 7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수당	100	104	108	112	116	540
	보수	393	408	423	439	456	2,119
	소계	493	512	531	551	572	2,659
운영비		122	125	127	130	132	636
법정 부담금	퇴직충당금	33	34	35	37	38	177
	기관부담금	58	62	66	70	75	331
	소계	91	96	101	107	113	508
합계		706	732	759	788	817	3,8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꾀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이하 “학도의용군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학도의용군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3(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의 설립)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운영비, 퇴직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현재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을 통해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산하 16개 공법단체의 회원수와 국고보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국가보훈부 산하 16개 공법 보훈단체 국고보조 현황: 2025.6. 기준

(단위: 명, 백만원)

단체명	회원수	국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합계
광복회	9,007	1,771	739	918	3,428
상이군경회	104,688	2,865	792	4,356	8,013
전몰군경유족회	96,983	1,821	770	78	2,669
전몰군경미망인회	58,927	1,421	794	22	2,237
무공수훈자회	54,787	1,828	806	1,351	3,985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1	147	50	95	292
4·19민주혁명회	115	194	102	-	296
4·19혁명회생자유족회	186	169	78	397	644
4·19혁명공로자회	211	169	91	3	263
특수임무유공자회	3,939	1,492	197	377	2,066
고엽제전우회	119,787	1,876	741	197	2,814
6.25참전유공자회	30,607	1,671	841	105	2,617
월남참전자회	165,071	1,676	835	135	2,646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131	773	74	57	904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131	495	34	56	585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1,677	634	48	56	738
합계	648,248	19,002	6,992	8,203	34,197

자료: 국가보훈부

- 6·25참전군인(1,257,803명) 대비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수(30,607명) 비율 (2.43%)을 적용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추정 회원수는 674명임

[표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회원수 추정: 2025년

(단위: 명)

구분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보충병력	소계	회원수	생존자 등록률
6·25참전군인	497,964	29,358	11,813	718,668	1,257,803	30,607	2.43%
구분	부산	서울	대구	기타	소계	회원수 추정	생존자 등록률
학도의용군	4,500	3,200	2,000	18,000	27,700	674	2.43%

주: 6·25참전군인과 학도의용군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 「통계로 본 6·25전쟁」(2014.6.)과 「6·25전쟁 통계자료집」(2023.12.)에 기재된 인원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중앙회의 규모는 6·25참전유공자회의의 50% 수준으로 하고, 지부는 3개(부산, 서울, 대구)를 두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의 인건비, 운영비, 퇴직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정: 2025년

(단위: 명, 천원)

구분			단가(월)	인원	합계	
인건비	중앙회	수당	회장	2,153	1	25,836
			부회장	1,879	1	22,548
			감사	1,879	1	22,548
			사무총장	1,831	1	21,972
			소계	—	—	92,904
		보수	국(부)장	1,772	2	42,528
			과장	1,679	2	40,296
			사원	1,650	4	79,200
			운전원	1,760	1	21,120
			소계	—	—	183,144
	지부	보수	지부장	1,714	3	61,704
			사무국장	1,668	3	60,048
			과장	1,656	3	59,616
			소계	—	—	181,368
	합계					457,416
운영비	중앙회	중앙회 사무·운영	8,000	12개월	96,000	
	지부	지부 운영비	594	3개 지부	21,384	
	합계				117,384	
법정 부담금	퇴직충당금		—	—	30,376	
	기관부담금(4대보험)		—	—	50,883	
총계			—	—	656,0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인건비, 운영비, 기관부담금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¹⁾를 적용하여 추정하며, 퇴직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²⁾에 따라 8.33%(1개월분/12개월)를 적용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중앙회, 지부), 운영비(중앙회, 지부), 퇴직충당금,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2025년 기준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인건비,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 국고보조 추정액은 다음과 같음

[표 5]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국고보조액 추정: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법정부담금		합계
			퇴직충당금	기관부담금	
추정 국고보조액	457,416	117,384	30,376	50,883	656,059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2025년 기준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국고보조 추정액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퇴직충당금 적립률·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운영비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1) 명목임금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기관부담금 요율(2025. 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8%	3.8%	3.8%	3.8%	3.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기관부담금 요율	11.436%	11.750%	12.064%	12.406%	12.750%	13.096%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표 6]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건비	수당	100	104	108	112	116	540
	보수	393	408	423	439	456	2,119
	소계	493	512	531	551	572	2,659
운영비		122	125	127	130	132	636
법정 부담금	퇴직충당금	33	34	35	37	38	177
	기관부담금	58	62	66	70	75	331
	소계	91	96	101	107	113	508
합계		706	732	759	788	817	3,802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수 비율, 국가보훈부의 공법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가 설립되면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